

대전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나204659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나2046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소1723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4. 4. 2.

판결 선고 2024. 4. 2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소172331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C1) (이하 'C협회'라 한다)의 전직 D지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C협회의 E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C협회와 사이에 지회장 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총판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지회장 계약', '이 사건 총판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지회장 계약 제7조 및 이 사건 총판 계약 제4조에 의하면 협회 가맹비는 247만 원, 총판 가맹비는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1	2015. 6. 13.	피고	F 총판 계약	갑1-1
C협회	F 지회장 계약	갑1-2		
2	2015. 7. 19.	피고	G 총판 계약	갑1-3
C협회	G 지회장 계약	갑1-4		
3	2015. 7. 19.	피고	H 총판 계약	갑1-5
C협회	H 지회장 계약	갑1-6		
4	2015. 8. 9.	피고	I 총판 계약	갑1-7
E(피고)2) 다른 지회장 계약서와는 달리, 2015. 8. 9.자 지회장 계약서의 당사자('갑')만이 '사단법인 C협회'가 아닌 '사단법인 C장 / E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C협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피고 서명만 있음).		I 지회장 계약	갑1-8	
5	2016. 4. 11.	피고	I 총판	갑1-9

1	2015. 6. 13.	피고	F 총판 계약	갑1-1
			계약	

다. 원고는 2010. 11. 4.부터 2015. 7. 16.까지 C협회 명의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197만 원 정도의 돈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1. 피고에게, '피고가 D 지역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휘타구 용품과 자격증을 J협회를 통해 나가게 하는 등 이 사건 지회장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휘타구 용품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파행적인 협회 운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회장 계약을 각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협회가맹비 988만 원 및 이사회비 12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8.경 K에 있는 L초등학교 축제현장에서 피고와 C협회 D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상 미팅 중이던 M, N, O이 듣고 있는 가운데, "C협회는 망해가고 있으니 당신들은 지금 계약해봐야 소용없다. 나처럼 당신들도 곧 그만두게 될 것이다. 피고는 사기다"라고 말하였다는 모욕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 법원 2018고약7454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2018고정894)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16. 항소기각 판결(이 법원 2019노2904호)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대법원 2020도13597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9.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7. 11. 피고가 파행적인 협회 운영, D지역에서의 이중계약 시도, 불공정 약정 등으로 이 사건 지회장 계약 및 총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협회 가맹금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이 사건 지회장 계약은 2017. 7. 11.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0. 11. 4.부터 2015. 7. 16.까지 피고에게 C협회 가맹비 9,880,000원[1개구(區) 당 2,470,000원으로서, D 4개구(G, F, H, I)의 합계이다] 중 6,272,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개비, 휘타구 용품비 및 사무실 대여비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협회 가맹비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총 3,608,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장 계약이 피고의 귀책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협회 가맹비 합계 9,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 및 파행적 협회 운영으로 인하여 협회 가맹비 9,8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총판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지회장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C협회와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E인 피고의 서명 옆에 C협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C협회 가맹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피고 개인 은행계좌가 아닌, C협회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인천광역시장이 2017. 10. 25. 원고에게 보낸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의 <개선·조치사항> 중 다항에 의하면 '정관상 총회임원은 이사, 대의원으로 현재 법인등기부상 이사(2명)만 확인되므로,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을 정관에 맞게 구성하여

총회 임원 확보 및 이에 대한 사항 공개 운영을 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는 것인데,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C협회에는 2인의 임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④ 달리 위 협회가 사실상 피고 1인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피고 개인과 C협회의 법인격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회장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협회이고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협회 가맹비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피고와 C협회의 법인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회장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3), 그렇다면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2017. 7. 11. 이 사건 지회장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게다가 원고는 2010. 11. 4.부터 2015. 7. 16.까지 C협회 가맹비로 합계 9,8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3.부터 같은 해 8. 9. 사이에 F, G, H, I 지역의 지회장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원 중 2015. 6. 13. 이전에 C협회로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지회장 계약에 기한 협회 가맹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지회장 계약 체결 이후에 C협회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액수도 약정된 협회 가맹비인 2,470,000원과 일치하는 것이 없고, 각 금원들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협회 가맹비 중 3,60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관하여 제기한 의혹들 가운데 휘타구 심판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거나, 휘타구 용품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을 출원하였을 뿐 등록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특허' 등록이 된 것처럼 표현하였다는 부분은 일응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C협회는 이 사건 당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등에 비추어 보면, C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소외 M 등과 총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인천광역시장의 원고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C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개선·조치사항에 지나지 않고, 위 회신만으로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C협회를 위법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갑 제7호증의 6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C협회 홈페이지에 '휘타구 특허등록증', '특허상표등록증' 등의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장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휘타구 용품의 특허등록 여부나 C협회의 국가기관 등록단체 여부가 이 사건 지회장 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나 협회의 파행적 운영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9,8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애란

판사임수정

판사유현정

- 1) '휘타구'란 공을 양손으로 휘두르거나 쳐서 네트를 넘기는 스포츠를 말한다.
- 2) 다른 지회장 계약서와는 달리, 2015. 8. 9.자 지회장 계약서의 당사자('갑') 만이 '사단법인

C협회'가 아닌 '사단법인 C장 / E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C협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피고 서명만 있음).

3) 이 사건 지회장 계약에서 정한 C협회의 의무는 원고에게 휘타구 보급에 관한 소개권을 줄 의무(제3조)와 연수 시 원고에게 판공비를 지급할 의무(제4조)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 내지는 위 계약의 해제사유는 위 각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